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38

발의연월일: 2021. 5. 7.

발 의 자:권명호·박대수·정진석

강민국 · 이철규 · 임이자

유창현 • 김형동 • 정운천

정희용 · 이종성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어업인 등의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농어업인 등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의 사업소분·종업원분 및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지만 모두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여건 악화,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활동과 농어업 및 관련 분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이러한 지방세특례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관련 사업과 주택개량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6조제1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 관련 감면 등) ① -----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 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 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 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 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 ---2024년 12월 31일----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 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林資 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 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

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면제한다.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저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 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 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 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주택개량 사업계 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 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 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

<u>2024년 12월 31일</u>
 세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2021년 12월 31일</u>까지 감면한다.

1. • 2. (생략)

② (생 략)

<u>2024년</u>
12월 31일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